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황 경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사회과에서의 범의식 신장을  
위한 수업모형개발

200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정 은 경

사회과에서의 법의식 신장을  
위한 수업모형개발

황 경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정 은 경

# 인 준 서

정은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법률을 지향하는 사회로 변모하여 대부분의 사회갈등은 법적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크고 작은 법적 분쟁에 직면했을 때 기초적 법지식을 가져야만 법의 보호를 받고 권리행사를 바르게 할 수 있으며, 법적쟁점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당면했을 때 법의식을 갖추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과에서의 법교육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법교육은 건전한 법의식 함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 영역이다. 법률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학교육과 달리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의 법의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교육은 학생들에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과 법적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 가치관 등을 개발할 교육적 기회를 조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법 태도를 기르는 한편 공동체 생활에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본다. 사회과의 중요한 목표는 학습자의 사고능력을 배양하여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있다. 법교육 또한 공동체의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치주의 원칙에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의 핵심적 요소를 구성한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에 따라 법교육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법을 내용으로 한다는 공통점만으로 산발적으로 법교육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법의식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사회과에서의 법교육의 의의와 목표를 살펴보고 법

교육의 수단인 미국의 청소년 법정제도를 문헌을 통해 연구하였다. 법교육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 법교육 운동(law studies movement)이 시작되었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각 주 혹은 연방 단위로 시도되었고 그 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법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청소년 법정제도’(Teen Court, Youth Court, peer Court)이다. 청소년 법정제도는 청소년의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초범이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또래 청소년이 참여하는 법정에서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제도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법교육의 목표인 법의식 신장을 위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청소년 법정제도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수업모형은 기존의 모의재판을 이용하는 경우에 일부 적극적인 학생들만이 활동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고, 이조차 실행하기 힘든 고등학교에서는 이론중심의 법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특정한 배역을 맡지 않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하여 재판과정이 끝난 후에는 재판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간의 결과를 비교하여 적절한 판결이었는지 여부를 학생들 스스로 결론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교사가 만든 시나리오를 그대로 적용한 기존 모의재판과 달리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법정의 출발점으로 하고 경험이 다른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으로 일반화 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 상호간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여 법교육의 최종 목표인 법의식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첫째,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법지식을 획득할 수 있게 하며, 획득한 지식은 청소년 법정제도 수업모형의 실연으로 학습하게 되므로 강의식 수업보다 법적 절차, 법의 기능, 법의 역할 등 법관련 지식을 획득하게 된다.

둘째, 기존 학교 수업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재판을 통해 어렵고 딱딱했

던 법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법의 신뢰감을 가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민주시민으로서 법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게 된다.

셋째, 사례를 통해 법적 해결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당면한 법  
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내용과 방법 .....	3
3. 연구의 한계 .....	5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이론적 배경 .....	6
1.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신장 .....	6
1) 법교육의 정의 .....	6
2) 법교육의 목표 .....	8
3) 법의식의 의의 .....	9
4) 법의식 형성에 관한 이론적 관점 .....	11
2. 국민 법의식에 대한 실태조사 .....	15
3. 법교육 수단으로서 청소년 법정제도 .....	16
1) 청소년 법정제도의 의의 .....	17
2) 청소년 법정제도의 목적 .....	18
3) 청소년 법정제도의 형태 .....	19
4) 청소년 법정제도의 운영방식 .....	21
5) 청소년 법정제도의 효과 .....	23

Ⅲ. 법교육 수업모형의 설계 및 사례 제시 .....	28
1. 본 수업모형에서의 청소년 법정제도의 의미 .....	28
2. 청소년 법정제도 수업모형의 설계 .....	29
3. 청소년 법정제도 수업모형의 수업 사례 제시 .....	41
1) 수업의 개관 .....	41
2) 수업의 목표 .....	42
3) 지도상의 유의점 .....	42
4) 수업방식 .....	43
5) 수업과정안 .....	44
Ⅳ. 결론 및 시사점 .....	50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표 목 차

<표1> 법교육의 의의

<표2> 청소년 법정제도의 유형

<표3> 청소년 법정제도 교수·학습 과정안 1차시

<표4> 청소년 법정제도 교수·학습 과정안 2차시

## 그 립 목 차

<그림 1> 미국 청소년 법정제도 운영 절차

<그림 2> 청소년 법정제도 모형 개발

<그림 3> 재구성한 재판절차

## 부 록

부록 1- 게임아이템 사기 시나리오

부록 2- 활동지

부록 3- 법정보고서

부록 4- 판결문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고소·고발사건은 2003년 기준 62만 5천여 건(총191만 건의 약33.6%, 그 중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19.4%)으로 연평균 1만 2천여 건에 불과한 일본에 비하여 약 52배에 달한다(법무부, 2005). 고소·소송 등 법적 분쟁이 빈발하여 사법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하여도 형사고소, 각종 소송 등 상당수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법은 어렵고 권위적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실용적 계약문화와 긍정적인 국민 법의식의 정착이 필요하고 고등학교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사회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적용되는 법치사회이다. 그러므로 법에 관한 기초소양을 구비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핵심적인 자질의 한 요인이 된다.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말은 사회와 법체계와의 불가분적 관계를 나타낸 말이다. 또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법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법격언은 사실상 법치사회의 민주시민은 법적갈등상태에 당면하여 기초적인 법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최인화, 1994, p.8).

특히 법적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청소년들의 법적 소양과 법의식 및 법 생활 문화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교육은 청소년들의 법의식과 법적 문제해결력을 촉진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또한 최근의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참

여의 폭 확대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관련해서도 시민들의 법적 소양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사법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사법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대한 소양을 갖춘 시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도 고등학교에서 법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는 법이 지배하에 있는 법치사회이므로 모든 개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보장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전문가인 법률가에게 맡겨둘 수만은 없다. 또한 현대는 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시기부터 법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법교육은 사회과목에서 다루어진다. 사회과는 사회인식능력을 기르고 이를 위해 주로 사회과학적 지식을 활용한 문제해결능력과 바람직한 가치관 및 태도를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지닌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 제7차 교육과정 개편으로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9개 심화선택과목의 하나로 신설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 개편이전에도 법 교육이 있기는 하였지만 주로 헌법과 기초법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과 사회’ 과목에서는 생활법의 차원에서 다양한 법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의 실제생활과 관련되는 내용을 학습하면서 학생들은 법적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개인적·사회적 분쟁의 합법적인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법 교육을 강조하지만 아직까지 단순한 지식전달로 법에 대한 어려움이 여전하고 모의재판이 필요하다고만 할 뿐 실행되지 않은 학교현실에서 교실 내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법교육 교수·학습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미국의 “법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각종 보고서는 법교육이 청

소년 폭력과 기타 비행을 감소시키는 예방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미국의 청소년 법정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바탕을 둔 수업모형을 제시하여 사회과에서의 법 교육이 법의식을 신장하고, 또한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국민의 사법참여재판제도에서 청소년들이 장차 성인이 되어 배심원으로 선발되었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심원으로서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2. 연구내용과 방법

사회과 법교육은 사회생활 전반과 관련되어 있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법적 생활을 경험하게 하고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 중심의 주입식 수업방법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과에서의 법교육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참여형 수업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법의식 신장과 사법절차인 재판과정의 이해를 돕고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법교육 수업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제 I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과 함께 논문전체의 전반적인 내용과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서술한다.

제 II 장에서는 이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론적 배경을 다룬다. 법교육의 정의와 목표를 검토하고 미국의 청소년 법정제도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수업모형 개발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 III 장에서는 새로운 청소년 법정제도 수업모형에서의 청소년 법정제도의 의미를 체계화하여 연구의 핵심적 과정인 청소년 법정제도 수업모형을 개발한다. 그리고 새로운 수업모형의 설계와 주요 단계의 교수학습을

설명한다. 이를 잘 활용하여 고등학교 법교육에 적합한 지도안을 작성한다.

제 IV장에서는 이 연구의 전체 요약과 한계점,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정리한다.

본 연구의 청소년 법정제도 수업모형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법의식 신장을 위한 법교육의 의의와 목표에 대해 살펴보고 청소년 법정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둘째, 미국의 청소년 법정제도에 바탕을 두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수업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법의식을 신장하고 소송에 관한 사법절차를 이해하고 실제 학교생활에서 문제되고 있는 주제를 정하여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주제는 청소년 법정제도의 쟁점을 살리고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게임아이템 사기’를 선택했다. 게임은 청소년들의 주된 여가활동에 해당한다. 2007년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의 10명중 7명(72.2%)이 게임을 하면서 여가를 보낸다고 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한 오락이나 게임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일종의 중독현상이 나타나 현실적으로 적응에 현저한 곤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이지혜, 2006, pp.53~55). 또한 여가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의 희귀성과 자신의 아바타를 더 강하게 키워 매매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아이템 사기 같은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스스로 생각해 볼만한 실질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 교육적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3. 연구의 한계

지금까지의 법교육이 현실 생활과 거리가 먼 실정법상의 조항이나 이론 학습이 중심을 이루면서 암기위주의 강의식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수업은 학생들에게 법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떨어져 실생활에 필요한 법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인 본 연구는 사법 행위를 경험하고 법지식에 대한 이해와 법적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시기의 법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입시의 문 앞에서 시간을 다투는 교육현장의 특성상 바로 적용하기에는 본 연구만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미국의 청소년 법정제도에 이론적 근거를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학교의 특수성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수정과 변형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청소년 법정제도 수업모형이 효과적인 수업의 방법이지만 아직까지 고등학교 학생들의 법의식이 미약하고 참여형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실제 적용하였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법교육의 의의와 목표를 검토한다. 그리고 법교육 수업을 위해 개발할 수업 모형의 이론적 근거인 미국의 청소년 법정제도에 대하여 검토한다.

### 1.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신장

법교육은 학생들에게 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법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능동적 참여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교육을 통해 획득한 법지식은 법적 문제해결기능과 법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고 고등학생들에게 법적지식과 기능, 태도, 가치관이 조화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업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교육의 정의와 목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법교육의 정의

법률전문가가 아닌 청소년 또는 성인 일반을 대상으로 법의 형성과정, 법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와 가치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제공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대다수 법 교육자들은 법교육의 의미를 ‘복잡하고 가변적인 현대 사회에서 법과 법적 쟁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 기능, 가치관과 태도 등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 경험’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법교육 관련 교육자들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법교육의 성

격을 파악하고 있다. 즉, 전문 법조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 교육과는 달리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 교육은 학생들에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과 법적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 가치관 등을 개발할 교육적 기회를 조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법 태도를 기르는 한편 공동체 생활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sup>1)</sup> 법교육은 통상 시민들로 하여금 법적 절차와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여 법치사회의 기반이 되는 시민들의 법적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교육적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법교육(Law-Relate Education)은 사회과 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초·중·고교생들에게 법과 법체계 및 법 현상을 분석 탐구토록 함으로써 사회인식능력을 기르고 이를 전제로 법적소양과 법적 문제해결능력을 길러 자유 민주 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 최인화(1994)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법교육의 의의를 정의하고 있다.<표1> 참고)

---

1) 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법학교육(Legal Education)과 초중등단계,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법교육(Law-related Education)은 목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법학교육에서는 개별적인 법조문이나 법학적 사실들을 많이,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능력이 기본이 되므로 지식의 측면이 강조되지만 법교육은 법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가지고 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법학교육은 직접적으로 법적 분쟁이나 논란이 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의 정확성을 강조하고 지식 자체의 논리성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을 중요시하지만 법교육은 스스로 모든 법적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법적 해결의 필요성과 장점을 깊이 인식하고 해결과정을 신뢰하며,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법률적 절차나 내용에 대한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법에 기반을 둔 논리적 사고의 방식을 이해하고 이에 따르는 사람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곽한영, 2007, pp.64~65).

<표1> 법교육의 의의

개인의 자아실현 차원	사회의 정의실현 차원
① 법적소양의 배양	① 법 질서유지와 불법행위해소
② 법적 사고의 형성과 정의감 형성	② 법의 지배원칙 실현
③ 자유와 권리의 공정한 행사	③ 행정 및 입법과정에서의 참여
④ 비관적 사고와 분석적 능력 계발	④ 법 및 법체계의 정당성 확보
⑤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	⑤ 공공복리 및 사회정의 실현
⑥ 법적 문제해결능력의 배양	⑥ 바람직한 법문화의 정착

위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법교육의 의의는 학생들에게 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법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능동적 참여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2) 법교육의 목표

미국의 법학자인 R.A. Gerlach, L.W. Lamrecht, Freud, J.U. Michaelis 교수 등은 법교육의 목표를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법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과 법 체제에 관련된 학생들의 태도, 가치관, 지식 등을 명료화하는 것

둘째, 학생들에게 사회와 그의 법적 체계에 대한 이해를 유도하고 법적 제도 내에서 자신의 효과적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

셋째,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력을 개발해 주는 것  
넷째, 윤택하고 조화로운 사회생활을 유지하도록 실용적인 법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게 하는 것  
다섯째, 법적 의사결정기능을 개발하여 정의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함으로써 시민생활에 책임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김범주(2001)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법교육 목표가 표현되지만, 이러한 목표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교육이란 법의식의 함양을 통하여 준법정신을 높이고, 생활상 필요한 법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것”이라 하였다. 즉 법교육의 목표는 ‘법의식 함양’과 ‘법적 지식의 습득’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법교육을 통해 획득한 법지식은 법적 문제해결기능과 법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고 고등학생들에게 법적지식과 기능, 태도, 가치관이 조화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업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법교육은 기본적인 법적 소양과 능력을 통해 건전한 법의식을 지닌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의식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고찰하고, 법무부의 법의식에 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법의식 실태를 알고 현재의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신장의 한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 3) 법의식의 의의

사회구성원들이 법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판단하려면 법에 대해 구성원들이 갖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의 자세나 정신'을 법의식이라고 한다.<sup>2)</sup>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의 건전한 법의식은 민주사회에서 법의 실효성을 보장해 주는 근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구성원들의 법의식이 전제되지 않은 법집행은 강제수단의 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물리적 강제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는 이미 민주사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법의식은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법질서 형성과 유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법의식(legal consciousness)에 관한 개념은 용어 자체가 지니는 추상성으로 인하여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사개념인 법감정(legal feeling), 법문화(legal culture) 등의 개념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보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이 나누어져 있어서 개념정의에 있어서 정론적인 입장은 없다. <sup>3)</sup>

---

2) 법일반에 관한 법의식을 ‘법관념’(Rechtsvorstellung)이라고도 한다. 법관념은 법일반에 대한 법의견 또는 법의식을 말한다. 법의견과 법의식은 구별되지 않으며 명확한 형태를 갖춘 것도 아니다. 즉, 법에 관해 갖는 대강의 인식을 법관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법정신(Rechtsethos)도 법관념과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법관념이 내면화되어 법행동에 있어 지주와 같은 역할을 행하는 상태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한 이러한 법관념이 좀 더 체계화된 이념으로 진전, 발전되거나 교조화된 체계를 갖출 경우 ‘법이념’(Rechtsidee)이나 ‘법이데올로기’(Rechtsideologie)라고 불리기도 한다(곽한영, 2007, p.79).

3) ‘법문화’(Legal Culture)는 매우 광범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대체로 한 사회에 있어서 법 또는 법체계에 대한 태도, 가치관, 의견을 가리킨다고 규정지을 수 있다(양건, 1986, p.214, 재인용).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가치관, 의견과 달리 한 국가 또는 한 집단 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법에 대한 태도를 법문화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람들이 법의 정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로 존중하고 있는지, 법에 대한 신뢰와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가 단위로 실시되는 ‘법의식 조사’는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법문화에 대한 조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법현상에 대한 정서적 요소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법감정(Rechtsgefuehl)’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법감정은 법에 대한 경외심, 불신, 혐오감 등 법에 대한 정서적 반응·태도를 의미한다. 법규범은 기본적으로 정서적 요소를 배제하고 목적합리성을 지향하는

#### 4) 법의식 형성에 관한 이론적 관점

법의식 형성에 관한 이론적 관점에는 인지발달론적 연구와 사회심리학적 연구로 나누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① 인지발달론적 연구

법의식 형성과 발달에 관하여 주요한 대표적인 인지 발달 이론가는 Piaget와 Kohlberg를 들 수 있고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한 Tap과 Levine의 이론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 가. Piaget 이론

Piaget의 법의식 발달론은 첫째, 자아중심적 법의식 단계이다. 6세 이전 아동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 구조상으로는 전조작기에 해당된다. 둘째, 타율적 법의식 단계이다. 대체로 6~10세 아동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발달상으로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규칙은 신성 불가침인 것으로 개념화된다. 많은 아동들이 법과 규칙이라고 알려주면, 어린 아동은 그것을 신성시 하게 되고,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자율적 법의식 단계이다. 11세 이상의 아동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발달 단계상으로는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이 수준에서는 규칙과 법은 사람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인식이 가능해진다. 규칙과 법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단체, 사회

---

것이기 때문에 법의식에서 정서적 요소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규범이 내면화되는 과정에서의 법의식이 발전, 전환되는 과정이 필연적이며 법 자체가 정서적 반응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의 표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법감정 역시 법현상의 이해와 수용에 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이영희, 2003, p.87).

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 법이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면, 또 모두가 바꾸기를 원하는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는다(문용린, 1992, p.93, 재인용).

아동들의 법과 규칙에 대한 의식은 어른과 뚜렷이 구분되고 법에 관한 지식이 많고 적음, 또는 긍정, 부정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 Kohlberg 이론

Kohlberg는 Piaget과는 달리 청년기의 도덕성 발달에 관심을 가졌다. Kohlberg는 청소년들에게 가상적인 갈등상황을 제시하고서 청년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에 따라 여섯 단계로 발달수준을 구분하였다. 그는 이 갈등상황에 대한 청소년들이 응답 자체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응답 뒤에 숨어있는 논리에 관심을 두었다. 즉, 두 응답자의 대답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 판단의 논리가 비슷한 경우에는 두 사람의 도덕성 판단수준을 같은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Kohlberg는 아동들은 시간과 옳은 것에 대한 개념화가 어떤 단계적 수준을 거치면서 발달된다고 보았다. 물론 옳은 것에 대한 개념화는 도덕적, 법적, 사회적인 것 모두를 포괄한 개념화이다. Kohlberg는 이를 3수준 6단계로 나누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인습이전수준으로 1단계는 올바른 것을 복종하는 것이며,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옳은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단계에서는 법은 명령이며 그것에 복종하고 순응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2단계는 도구적 이기주의 단계로 본인에게 이로우면 무엇이든 옳다고 믿는다. 본인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옳은 것이며 지켜야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둘째, 인습수준으로 3단계는 자신을 둘러싼 주의의 사람들에게 애착을 갖는 단계로 옳은 것은 집단에 도움과 이익을 주

는 것이며, 집단에서 요구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법은 지켜야 하는 것으로 주위의 사람들이 법을 지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 4단계에서는 법의 정당성을 사회 질서유지에서 찾는 단계로서 옳은 것은 국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만약 사회에 법이 없거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4단계의 지배적 인식이다. 셋째, 인습 이후의 수준으로 5·6단계가 이에 속한다. 5단계는 사회계약의 단계로서 법은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체계이다. 법을 지키는 것은 계약이 옳고 유효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계약이 사회에 오히려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경우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6단계는 보편적 윤리 단계로 법은 보다 넓은 의미의 정의와 상위의 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된다(문용린, 1994, p.95, 재인용).

Kohlberg는 모든 사람이 최고의 도덕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은 아니고 소수의 사람만이 6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다. Tap과 Levine의 이론

Tap과 Levine은 Kohlberg가 제시한 도덕성 발달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각 발달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인습이전 수준으로 1단계는 힘이나 권력이 우세한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며, 처벌을 회피하고, 가치와는 별개로 신체적 결과에 의해 좋은 행동, 나쁜 행동으로 결정된다. 2단계는 기본적으로 쾌락주의적이다. 올바른 행동의 준거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하는 것이다. 둘째, 인습수준으로 사회 내에 고정된 규칙 혹은 권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로 특정화된다. 3단계는 타인을 기쁘게 하고, 인정받으려는 준거 속에서 법을 준수하는 행동을 한다. 4단계에서는 법과 질서의 단계로 고정된 규칙에 복종하는 것, 권위에의 존경이 주어진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한다. 셋째, 인습이후의

수준은 법 제정의 관점으로, 사회체제를 위해 필요한 조건인 법적인 지시가 일방적 권위의 명령이 아니라 보편적인 원리에 의한 윤리적 토대임을 인식한다. 5단계에서 올바른 행동은 전체사회의 동의에 근거하고 개인의 권리에 입각해서 정의된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적 유용성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법을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보편적 윤리의 단계인 6단계는 논리적 이해, 보편성에 근거한 원칙적 사고를 한다(장윤정, 1991, pp.46~48, 재인용).

이렇듯, 인지발달이론의 공통점은 법의식 형성과 발달이 인지발달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각 발달단계는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교육의 목표인 법의식의 신장을 위해서는 사회과에서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부딪히게 될 부담을 덜고 법이라는 테두리에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순차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② 사회심리학적 연구

학생들의 법의식에 관하여 사회 심리학적 입장에서의 연구는 경험적 입장에서 체계화시킨 사람은 Fraser와 Smith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긍정적인 법의식의 발달이 법교육의 중요한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의식에 대한 평가의 곤란함과 태도 측정에 관한 적당한 수단이 부족한 관계로 오히려 이 부분이 무시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법의식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 개념으로 체계화시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교사와 학생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면접조사의 결과로서 법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 범주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박수봉, 1999, p.37).

첫째, 정상인이 법관에 대한 인식으로 학생들이 법관들은 언론매체에 의해 묘사되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이웃과 같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둘째, 법교육

에 대한 즐거움으로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법교육을 받을 때 느끼는 흥미와 관심의 정도를 의미한다. 셋째, 법의 역동성으로 학생들이 법을 생각할 때 정적이며 고정 불변한 것으로 여기는가 또는 동적이며 변화하는 것으로 여기는가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넷째, 법의 효능감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나 공공의 여론이 법의 제정과 그 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다섯째, 법에 대한 이해로써, 학생들이 법이란 법률가들을 제외한 보통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여기는 정도를 말한다.

## 2. 국민 법의식에 대한 실태조사

위에서 설명한 법의식에 대한 우리 국민의 법의식은 어느 정도인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 법무부에서는 체계적인 법교육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실제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 영역을 조사하여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법교육 콘텐츠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중·고교생 및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법에 대한 인식, 법의 필요성 및 존재이유, 법의 공정성, 준법의식, 생활 속의 법률지식 수준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법에 대한 이미지에 대하여 일반국민과 청소년 ‘준법’이라는 법의 원론적 이미지가 강하고 권위적이고 엄격하다는 부정적 측면이 많았고 돈이나 명예·권력을 얻기 위해서 법을 어길 수 있다는 법에 대한 일반국민과 청소년의 부정적 평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반국민과 청소년 대다수(각각 86.8%, 82.75)는 ‘법이 어렵다’

라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 ‘법이 어렵다’고 느끼는 주된 이유로는 모두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해서’, ‘법 내용이 실제생활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서’, ‘법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어서’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과에서 법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교육 실태에 대해 일반국민 22.4%, 청소년 29.0%만이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현재 학교에서의 법교육이 부실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다(법무부, 2007).

이와 같이 국민들의 부정적인 법의식은 역사적으로는 법을 중요시하지 않은 풍토를 시작으로 ‘법보다 주먹’,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는 표현처럼 불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범죄자를 영웅시 여기는 분위기도 한 몫하고 있다. 이런 법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들의 변화를 학교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사회과의 목적이 시민의식의 함양이듯이 법교육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길러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의 법의식 함양을 위해 현재 법교육의 새로운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 3. 법교육 수단으로서 청소년 법정제도

법교육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1950년 이래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각 주 혹은 연방 단위로 시도되었고<sup>4)</sup> 그 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법교

---

4) 실제 법교육이 가장 포괄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경우, 1950년대 이후 법교육 운동이 시작된 계기는 생활과 동떨어진 ‘화석화된 지식’을 반복하여 암기, 이해시키려는 전통적 교과교육을 개선하려는 교육적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그 후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와 전문가 단체의 각종 활동이 학교교육과 결합하면서 법교육 개념의 내포와 외연이 점점 확대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법교육은 법과대학과 변호사협회의 폭넓은 후원에 힘입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미국의 법교육(Law-Related Education)이라 함은 학교의 교과교육 뿐만 아니라 법과대학과 전문가 단체에서 지원하는 모든 실천적 활동을 포괄적

육 프로그램이 바로 ‘청소년 법정제도’(Teen Court, Youth Court, peer Court)이다.<sup>5)</sup> 청소년 법정제도는 2005년 자료에 의하면 미국 약 50개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청소년 정책포럼은 2004년 11월에서 2005년 1월까지 청소년 법정제도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매년 11만명에서 12만 5천명에 이르는 소년범죄자들이 청소년 법정제도 프로그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체포된 소년범의 9%가 정규소년사법제도에서 청소년 법정제도 프로그램으로 우회되고 있다. 매년 10만명 이상의 새로운 청소년들이 지원자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pearson and Jurich, 2005, p.7). 또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재비행 감소 및 참여 청소년들의 법의식 향상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 1) 청소년 법정제도의 의의

청소년 법정제도는 청소년의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초범이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또래 청소년이 참여하는 법정에서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제도이다.

1983년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된 청소년 법정제도는 초범 청소년의 재범율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사법 제도 방식의 하

---

으로 차지하고 있다(Deborah Williamson, 2007, p.2).

5) 청소년 법정제도의 국가적 모델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켄터키의 청소년 법정 프로그램이다. 1990년 11월, 켄터키 대법원의 대법관 로버트 F. 슈테판은 공교육현장에서 법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26명 멤버의 원탁회의를 구성하였다. 원탁회의의 구성원은 1992년 2월 청소년법정 개념을 착안하고 텍사스의 오데사와 애리조나의 길라 카운티에서 청소년 법정 모델을 탐색하였다. 원탁회의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접근의 장점을 인정하고 켄터키 청소년 사법제도에 청소년 법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Deborah Williamson, 2007, p.362)

나이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청소년 사건의 재판 과정에 배심원, 변호인, 집행관 혹은 법정 서기 등으로 참여하게 해 봄으로써 시민의 의무를 직접 경험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법과 사법절차에 대한 지식도 제공한다. 이 제도의 기본적인 전제는 청소년 사법 처리 과정에 동료 청소년을 참여시켜서 이들의 압력을 바탕으로 비행 청소년이 준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Lyles. J. & Knepper. p. 1997, 법무부, 2006, 재인용 p.14).

또한 사법 처리의 결과의 하나로 해당 청소년을 다른 청소년 사건의 처리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도덕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책임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청소년 법정제도가 다른 법교육 프로그램과 다른 특징은 법정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이 직접 구성원의 일부로 참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청소년 법정제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 사법 처리 과정이나 일반적인 청소년 사법 처리 과정과는 달리 법정을 구성하는 변호사, 검사, 서기, 배심원 등의 일부를 성인이 아닌 청소년으로 구성한다는 점이다. 이를 청소년들이 직접 법정의 구성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현재 심리를 받고 있는 비행 청소년에게 동료 집단으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물론 성인이 법정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재판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재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심리일시, 예산, 재판 구성원 책정 등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역할에서 머물거나, 재판장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 2) 청소년 법정제도의 목적

“청소년 법정제도 개념의 핵심은 초범들에게 범법행위가 습관화되기 전에 사법체계를 통해 긍정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행동을 책임감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청소년 범죄 감소를 실현시킬 수 있다 (Rothstein, 1985, 박성혁, p.19, 2006, 재인용). 동료집단과의 상호 작용은 책임감을 서서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제공된다. 청소년 법정제도 피고인들은 법정에 출두해야 하고, 그들의 행동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부여된 판결을 완수해야만 하며, 배심원이 의무를 져야만 한다. 즉 어른들로부터 ‘훈계’를 듣지 않으며, 대신 그들의 동료가 부여한 정의를 경험한다. 배심원과 변호사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이웃에 살고 있고 권위를 가진다. 피고인들이 배심원이 되어 동료 청소년들의 운명을 결정해야만 할 때, 그들은 높은 수준의 능력을 수행하는 것에 도전한다. 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법적 과정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법적 과정에서 그들의 활동적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은 법정체계에 관한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피고와 배심원의 구성원으로 재판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시스템의 한 측면을 보고, 법이 작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운다. 즉 청소년 법정제도는 청소년들에게 개인, 가족 구성원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교육시키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다.

### 3) 청소년 법정제도의 형태

청소년 법정제도의 구체적인 형태는 청소년을 법정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로 참여시키는가 또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가 등에 따라 지역적으로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켜 논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를 크게 보면 성인 판사제(adult judge), 청소년 판사제(youth judge), 동료 배심원제(peer jury), 청소년 집단판사제(youth tribunal) 4

가지의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미국에서는 성인 판사제가 절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청소년 판사제가 가장 낮으며 나머지는 비슷한 비율을 차지한다. 이 네 가지 형식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청소년 법정제도의 유형 (박성혁, 2003, p.6)

특징	성인 판사제	청소년 판사제	동료배심원제	청소년집단 판사제
판사	성인	청소년	성인 (제한적 역할)	청소년 (보통3명)
청소년 변호사	존재함	존재함	존재하지 않음	존재함
배심원단의 역할	학생처분 건의	학생처분 건의	변호인단에게 질문 학생처분 건의	없음

<표2>의 네 가지 유형들 중 성인 판사제는 변호사나 검사, 판사 출신의 자원봉사자가 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청소년 판사제는 청소년이 판사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이다. 동료배심원제는 판사의 역할을 성인이나 청소년 모두가 담당할 수 있지만 성인 판사제와 차이점은 전문 변호사나 검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배심원 패널을 이용한다. 청소년집단 판사제는 배심원이 없이 세 명의 청소년 판사가 법정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네 가지 유형들 중 우리 교육현실에 적합한 것은 청소년 판사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나 검사, 판사의 학교 봉사가 활성화 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청소년이 판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이 많은 학생의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다. 또한 만약 잘못을 저지르고 재판을 한 학생이 다음 재판의 변호인이나 판사의 역할을 맡게 되면, 자신의 행동이 아닌 동료 청소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관심과 능력을 발휘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절차를 수행하는 책임감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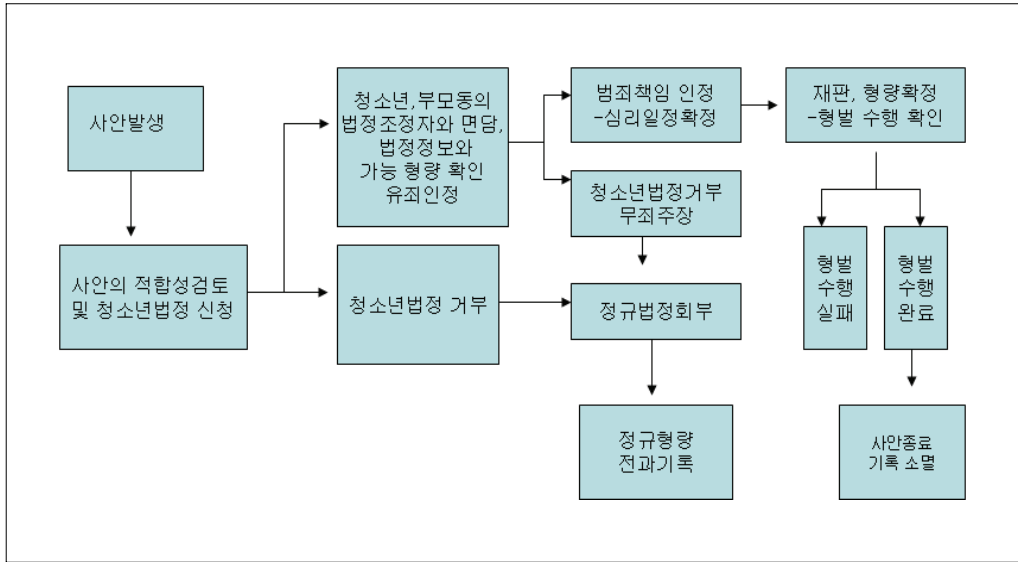
#### 4) 청소년 법정제도의 운영방식

청소년 법정제도는 정규 소년사법절차와 달리 청소년, 배심원들이 유죄나 무죄를 결정하지 않는다. 청소년 법정제도에 회부되는 대상은 이미 유죄를 인정하고 청소년 법정제도참가에 동의한 청소년 피고인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법정제도의 배심원들은 형벌부과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과도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형벌부과에도 제한된 범위가 지정되어 있으며 배심원들이 판결한 내용에 대해 판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청소년 법정제도는 정규 소년사법절차의 우회적 절차이므로 최종적인 결정은 소년법원의 판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 피고인들의 다음 청소년 법정제도에서 배심원, 변호사, 검사 등으로 참여하는 의무가 일종의 처벌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들은 일방적으로 법의 적용을 당하는 입장에서 직접 법을 적용해 보는 입장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행 청소년들은 법의 체계와 논리를 이해하게 되고 건전한 청소년들과 상호 작용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

청소년 법정제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그림 1> 미국 청소년 법정제도 운영절차 (박성혁, 이봉민, 2003, p.37)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경우 학교나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한 경미한 범죄 사건의 경우 소년법원이나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청소년 법정제도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청소년 법정제도는 사법제도의 대안적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이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이 위반한 사건이 경미해야 하며 초범일 때에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청소년 법정제도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정규법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청소년 법정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가벼운 사안이나 초범에 대한 선도적 의미로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청소년 법정제도에서 심리를 통해 형량

을 받았다 하더라도 형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규법정에 회부되어 다시 심리를 받아야 한다.

#### 5) 청소년 법정제도의 효과

청소년 법정제도는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 범죄자들을 책임감있게 만들 수 있으며 사법체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으로 발전시키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가. 비행청소년의 책임감 향상

청소년 법정제도는 피고인들로 하여금 다시 배심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린다. 청소년들은 배심원이 되어 동료 청소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도전하게 되며,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다.

청소년 법정제도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제재없이 지나갔던 사소한 문제행동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많은 정규사법제도에서는 청소년들이 미성년자 음주나 음주불법소지 등과 같은 사소한 불법행위로 기소되었을 때 이들을 처벌할 유용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소한 불법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훈방조치되고, 불법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거나 소년원에 수용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은 학생들에게 아주 미약하게 느껴지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미성년자가 음주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을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다. 하지만 청소년 법정제도는 먼저 손해배상

과 지역사회봉사를 통해 자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수정, 보완을 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게 하고 청소년에게 자신의 행위가 범죄자 자신과 희생자 그리고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 가르쳐 줌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효과를 통해 청소년 법정제도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소한 비행이라도 그것에 대해 제재조치가 있으며, 자신이 저지른 비행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수 있다.

#### 나. 동료효과

청소년기의 사회적 발달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동료관계를 형성시킨다, 동료들의 특성과 공유하는 가치의 종류에 따라 비행행동을 초래할 수도 있고, 문제행동을 수정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비행동료와 비행행동의 발달 사이에 상호연관성이 있다고 하지만 동료관계가 이러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동료관계가 일상적이며 필요한 것이고, 청소년기의 건강한 행동의 일면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오히려 동료관계는 문제행동을 수정하고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청소년 법정제도 프로그램은 이러한 효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청소년 상호작용 때문에 동료효과는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년범죄자들은 성인에 의해 훈계와 징계를 받는 것보다는 동료배심원에 의해 부과된 처벌과 징계를 받음으로써 더욱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그들의 동료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로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의자나 봉사자로서 청소년 법정제도에 참가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사회적, 경제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과 상호작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을 섞어놓는 것은 청소년

년 법정제도에 의해 주어진 배심원 의무나 자원봉사자 훈련과정, 교육워크샵 등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충동을 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상호작용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다른 동료들과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다른 관점의 의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다.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청소년 법정제도가 제공하는 교육적 가치는 자원봉사자나 피의자로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고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토론장을 제공해 준다. 말로니 암스트롱(1988)은 청소년의 능력과 기술의 발달은 청소년들의 미래의 행동을 더 올바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했다. 문제행동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청소년 법정제도를 통해 발달시킨 능력과 기술로 자기 자신을 되찾고, 문제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피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능력과 기술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청소년 법정제도 내에 다양하게 존재한다. 자원봉사자 교육기간과 교육워크샵, 지역사회 자원봉사, 법정 참여 등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문제해결력, 의사소통기술, 갈등해결력 등의 능력과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청소년 법정제도는 청소년들에게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그들의 동료와 효과적으로 협동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청소년 사회와 성인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 라. 청소년의 권한강화와 참여

청소년 법정제도에서 청소년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청소년들은 배심원으로서 그들의 동료에 대해 적절한 판결을 내리도록 요구받기도 하고 필요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고 동료를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다고 신뢰와 믿음을 보내주는 것은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 만일 학생들이 성인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사회적 계약에 자신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청소년들은 성인사회의 규칙인 법을 따를 이유가 없다.

청소년 법정제도를 통해 성인사회의 계약인 법과 자신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은 이해하게 된다. 청소년 법정제도에 참여하여 배웠던 능력과 기술은 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친사회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고, 비행행위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새롭게 재고해 볼 기회를 준다.

#### 5) 청소년 법정제도를 통한 법교육의 적절성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주제의식 강화와 법적 소외감 극복을 위해 국민들의 법제도에 대한 참여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참여재판제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 법정제도의 활용은 의미가 있다. 법을 지지하는 개념을 다루는 것을 통해 청소년들은 명확하고 참된 방법으로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에 대한 이해의 증가와 상황에서 그들이 계획한 역할은 위법과 높은 위험의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이것은 법교육이 “상호 작용적이고 협동적인 교수방법과 법과 시민 개념과 연관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청소년 사이에서 위험요인을 처리한다.”고 주장한 Buzzell의 주장과 통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청소년 법정제도는 학생들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스스로 법

과 규칙의 주인으로 느끼도록 하여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의식을 함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교육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 Ⅲ. 법교육 수업모형의 설계 및 사례 제시

앞서 살펴본 법교육의 의의와 목표, 미국의 청소년 법정제도를 통하여 수업모형을 개발한다. 청소년 법정제도의 새로운 모형의 의미와 특징을 확인한다. 그리고 새 모형을 설계하고 단계별 수업과정의 구체적 절차를 서술하고자 한다.

#### 1. 본 수업모형에서의 청소년 법정제도의 의미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 법정제도는 법의식을 신장하기 위한 법교육의 목표이자 법교육의 수단이다. 현재까지 법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모의재판을 강조하고 있지만 모의재판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제 학습 현장에서는 재판의 순서를 그대로 재현하여 법적 논쟁을 펼치는 것보다는 모형을 변형하여 학생들에게 적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은임, 2004, p.74). 실제로 모의재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부 적극적인 학생들만이 활동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고, 이조차 실행하기 힘든 고등학교에서는 이론중심의 법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자는 기존 모의재판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특정한 배역을 맡지 않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하고 재판과정이 끝난 후에는 재판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간의 결과를 비교하여 적절한 판결이었는지 여부를 학생들 스스로 결론내릴 수 있는 청소년 법정제도 수업모형을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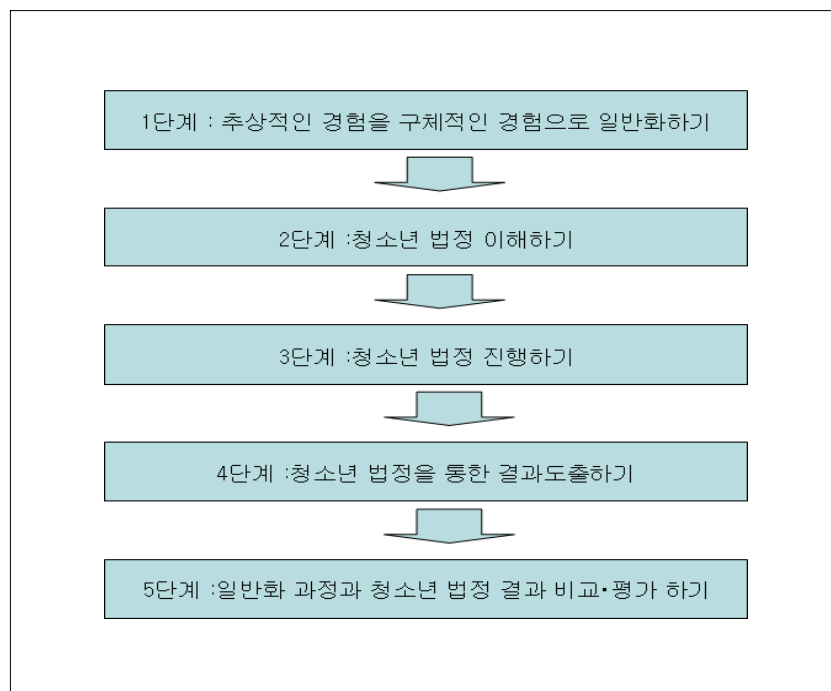
특히 본 연구는 일반적인 재판 과정에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경험이 법정의 출발점으로 기능하도록 하였고 이 경험이 다른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으로 일반화 할 수 있는 단계를 추가하여 앞으로 시작할 청소년 법정제도가 잘못을 저지른 한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험을 통한 논의로 이끌어낸 결론과 재판을 통한 판결과 비교를 통해 학생들은 당면한 갈등의 사례를 교실 안으로 끌어들여 학생들로 하여금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고, 법적 갈등과 논쟁점을 분석, 비판, 문제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법의식을 신장할 수 있다.

## 2. 청소년 법정제도 수업모형의 설계

본 연구에서의 수업모형은 미국의 청소년 법정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본 수업모형의 목적에 맞게 기본 재판과정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고 1단계와 5단계를 개발하여 수업모형을 완성하였다.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청소년 법정제도 수업모형 개발



## ▶ 1단계: 추상적인 경험을 구체적인 경험으로 일반화하기

학생들의 논의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앞으로 있을 재판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기초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활동지에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재판의 사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 ① 학생들의 추상적인 문제 발표

잘못된 문제와 우리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 가운데 수업내용과 관련된 경험들을 발표한다.

### ② 구체적 문제로 일반화

여러 문제 상황들을 경청 후 추상적인 경험에 대하여 논의를 한다. 여기서 다른 학생들의 반응과 생각을 공유하고 일반화한다.<sup>6)</sup> 일반화는 특정한 개인의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일반화된 문제는 재판과정의 주제로 선정될 수 있다. 특히, 학습자는 그들의 학교나 가정, 사회에서 쉽게 느끼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을 제시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논의를 거친 후 추상적인 문제를 제시한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

6) 콜브(Kolb,1976)의 경험적인 학습 순환 과정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결석하는 한 학생이 법교육에 들어 온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무단결석은 구체적인 경험이며 학습 순환의 다음 국면의 기초로서 기능할 수 있다. 다음 국면에서, 모든 법교육 참여자들이 무단결석의 경험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 다른 참여자들의 반응과 관찰들이 공유되고 논의될 것이다. 그 결과 무단결석을 경험한 참여자는 무단결석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노력하면서 수많은 관점으로 무단결석 경험에 대해서 성찰을 시작한다. 이러한 성찰로부터 무단결석을 경험한 참여자는 무단결석에 관한 논리적인 일반화와 결론을 도출하기 시작한다. 무단결석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관한 토론을 경청 한 후에 무단결석을 경험한 참여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순환의 마지막 국면에서 무단결석을 경험한 참여자는 이전에 도출된 일반화와 결론을 미래의 결정과 행위들을 이끄는 데 사용할 것이다(Deborah Williamson, 2007, p.54).

경청 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교사는 주어진 사례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토론 시킨다. 이런 질문과 토론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이 주어진 사례에서 문제를 자신의 일로 일반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활동지에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재판과정이 끝난 후 비교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

## ▶ 2단계 : 청소년 법정제도 이해하기

2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행해질 실질적인 재판을 위한 준비단계이다.

### ① 법정, 재판이라는 상황에 친숙해지기

학생들이 법정, 재판이라는 단어 자체에 친숙하지 않고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아 자신의 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로 인식하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소한 규정위반이 모여 법정이라는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참여자 훈련

재판의 규칙과 역할,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참여할 사람들을 연습시킨다. 이 과정에서는 법원에서 행해지는 재판의 기존 형식이 아니라 교칙위반으로 인한 유죄가 인정되고 기존의 징계가 아닌 청소년 법정제도에 동의한 청소년 피고인이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청소년 피고인들이 다음 청소년 법정제도에서 배심원, 변호사, 검사 등으로 참여하는 의무가 일종의 처벌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즉 법의 적용을 당하는 입장에서 직접 법을 적용해보는 입장으로 바뀌는 경험을 함으

로서 법의 체계와 논리를 이해하고 건전한 청소년들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

이 수업모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법정제도의 기본 형태는 대략 네 가지 종류가 있으나 우리나라 학교 상황에 가장 적절한 ‘청소년 판사제’의 모델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역할 및 권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ㄱ. 판사

판사는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을 듣고 배심원단의 결정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배심원단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데, 승인할 경우 배심원단의 결정은 판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만약 판사가 배심원단의 결정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배심원단이 다시 결정을 조정하고, 다시 승인을 받는 과정을 되풀이 하게 된다. 따라서 판사는 재판의 결론인 판결을 내리는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하고 실연 시에 시간적 한계점을 고려하여 배심원단의 결정을 적절히 조정하여 승인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ㄴ. 변호사

청소년 법정제도는 이미 잘못을 인정한 상태에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적절한 처벌 수위에서 가능한 낮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참작을 요청할 수 있다.

#### ㄷ. 검사

검사는 피고인의 위반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피고인의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판사에게 엄정한 판결이 나오도록 요

청할 수 있다. 검사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ㄹ. 배심원단

청소년 법정제도가 정기적으로 열린다면 모든 학생이 번갈아가며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할 경우 학생들의 참여가 크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상 정기적인 청소년 법정제도를 실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 번의 청소년 법정제도 실연이라 할지라도 배심원의 숫자를 늘려 적당한 선에서 많은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배심원단은 변호사와 검사의 주장을 듣고 난 후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때 처벌은 규정상 정해진 처벌에서 정상참작 여부에 따라 처벌을 경감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배심원단끼리의 회의를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몰라서 혼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배심원단은 재판하는 도중에 나온 여러 사람의 증언이라든지 기타 중요한 사항을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필기를 할 필요가 있다.<sup>7)</sup>

#### ㄹ. 서기

서기는 법정에서의 일들을 기록할 뿐 아니라 교사가 참여자들에게 청소년 법정제도 개정을 통보할 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법정에서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지만 법정이 열리기까지의 활동이 많아 실질적으로 서기가 담당하는 역할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7) 배심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나중에 평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필기한 것은 평결이 끝나고 나면 거두어서 과기해야 한다. 이것이 외부에 새어나가면 평결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한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 ▶ 3단계 청소년 법정제도 진행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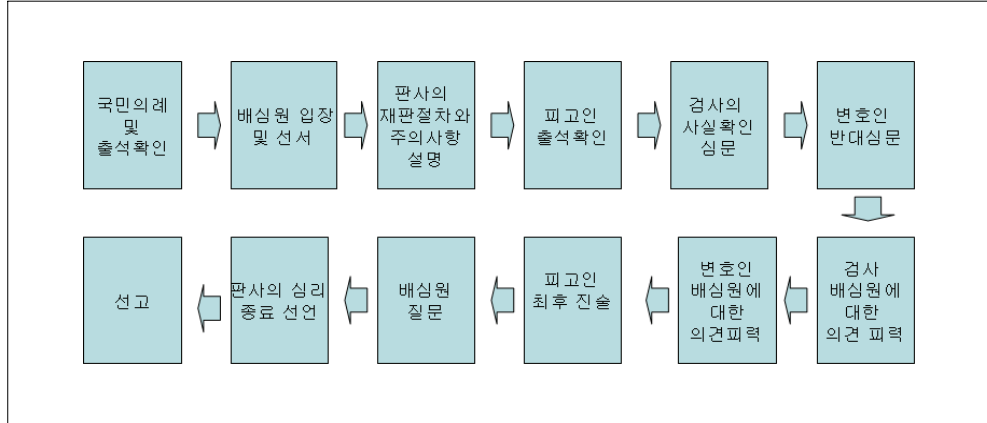
3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학생들의 추상적인 경험을 토론하고 공유하여 일반화한 문제를 재판과정을 통해 해결안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재판의 주제를 이해하고 재판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과 적절한 시기의 등장, 다른 인물들과의 협동이 중요하다. 실연 시에는 법정의 분위기를 살려 실제의 연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재판은 논고, 변론, 심리, 선고 등의 절차를 수행해 보는 것으로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수업에서 하게 될 재판은 반드시 그 과정을 모두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학생의 수준이나 주제에 따라서 과정은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다.

재판에서의 핵심은 서로 상반되는 주장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 논쟁하거나 주장하고, 자신들의 논점과 주장에 따른 근거들 즉, 증인, 증거물 등을 제시하게 된다. 이에 판사는 양측이 제시한 증인, 증거물 등을 참고하여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하여 선고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재구성하였다.

<그림 3> 재구성한 재판절차



청소년 법정제도가 열릴 때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재판장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배심원단, 서기가 자리를 잡은 후 판사가 들어온다. 판사가 재판 중 주의할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한 후 배심원의 선서가 이어진다, 서기가 사건 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고 피고인을 자리에 앉힌 후 판사가 피고인이 재판에 회부된 사안에 대해 공지한다. 먼저 검사가 피고에게 질문을 하고, 이어서 피고인측 변호인이 질문한다. 이 경우 검사나 변호인의 필요에 따라 증인이 증언을 할 수도 있다. 증인은 선서를 하고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대답한다. 검사와 변호인의 최후 구형과 변론이 끝난 후 배심원들은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정리하여 판사에게 제출한다. 판사는 이를 보고 수락할지 거부할지를 결정한다. 판사가 이를 수락한다면 피고인을 호명해 배심원을 보게 한 후 배심원 대표가 판결을 읽게한다. 만약 판사가 배심원단의 결정을 거부한다면 배심원단은 다시 회의장으로 가서 새로운 결정을 내린다.

재구성한 재판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ㄱ. 국민의례 및 출석확인

재판은 법정경위의 ‘일동 기립’이라는 구호로 개최된다. 청소년 법정제도는 실제 재판정의 모습과 같이 꾸미고 자리배치도 현 형사법정과 일치하도록 꾸민다. 이렇게 준비된 자리에 방청객, 검사, 서기는 미리 자리에 앉아 대기하고 법정경위는 자신의 위치에 선다. 재판부는 판사(3명)가 법정에 입장하여 착석 후 모두 앉는다.<sup>8)</sup>판사는 자리에 착석 후 검사와 서기가 출석하였는지 확인한다.

#### ㄴ. 배심원 입장 및 선서

배심원은 10명으로 구성하여 배심원 중 1명의 대표는 재판에서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법정이 지정하는 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한 판결을 내린다는 선서 후 배심원석에 착석하고 재판을 경청한다.<sup>9)</sup> 배심

---

8) 지방법원의 경우 재판부는 단독과 합의부로 나눌 수 있다. 단독은 경미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판사는 1명이다. 합의부는 복잡한 사건을 담당하고 3명의 판사로 구성한다.

9) 배심원 수는 법정형이 중대한 사형 등에 해당하는 대상 사건의 경우에는 9인으로 하고, 그 외의 대상 사건의 경우에는 7인으로 하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배심원의 수를 5인으로 하도록 한다.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 배심원을 둘 수 있다.(법률안 13조 및 14조) 배심원의 자격 요건은 배심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배심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법관의 제척사유와 같이 배심원이 당해 사건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배심원의 제척사유를 정하였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변호사, 법원·검찰공무원·경찰, 군인 등 다른 배심원에 대하여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배심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한다.(법률안 17조 내지 제21조) 배심원 선정절차는 지방법원장이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국민 중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다.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에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며, 법원은 선정기일을 지정하여 결격사유

원은 그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형의 양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즉 피고인이 죄를 범했느냐 아니냐, 즉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할 권한, 다음으로 죄를 범했다고 판단했다면 무슨 법에 위반되었느냐를 판단할 권한, 마지막으로 어떤 처벌을 내리느냐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꼭 배심의 결정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판사가 배심의 결정이 틀렸다고 보면 그와 달리 선고할 수도 있다.

#### ㉔. 재판장의 재판절차와 주의사항 설명

재판장은 재판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사건번호와 피고인을 호명하면서 개정을 선언한다.

#### ㉕. 피고인 출석확인

판사가 피고인에게 성명, 연령, 본적, 주소 등을 물어 사람을 정하는 절차이다.<sup>10)</sup>

#### ㉖. 검사의 사실 확인 심문

검사는 일어나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을 신문한다. 검사는 공소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밝힌다. 이때 증거·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채택을 하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검사의 증인신문에 대하여 변호인은 증인반대신문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재판의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실제적인 재판의 시작이다. 공소이유가 합리적이지 못하면 재판을 제대로 시작할 수 없고 앞으로 있을 재판의 결과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나 제척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배제한 후에 그 중에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무작위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한다.(법률안 제22조 내지 제31조)  
10) 이는 모두절차라고 하고 판사는 인정신문을 하고 검사는 기소 요지를 진술한다.

#### ㄴ. 변호인 반대신문

변호인은 검사의 신문에 대항하여 반대신문을 한다.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에 부당성과 억울함을 설명하고 증거·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채택을 하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sup>11)</sup> 변호인의 증인신문에 대하여 검사는 증인반대신문을 할 수 있다. 이때 변호인은 논리적인 모순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신문 중에는 인신공격을 할 수 없고, 유도신문을 할 수 없다.

#### ㄷ. 검사 배심원에 대한 의견 피력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죄의 성립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말할 수 있다.

#### ㄹ. 변호인 배심원에 대해 의견 피력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죄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말할 수 있다.

검사와 변호인의 배심원에 대한 의견 피력에서는 지금까지의 진술을 정리하여 배심원들로 하여금 재판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편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다.

#### ㄷ. 피고인 최후진술

검사, 변호인의 모든 진술과 증거제시, 증인신문이 끝나면 마지막 최종진술을 한다. 자신들의 주장을 마지막으로 내세우고 논지를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 강조한다.

---

11) 우리나라는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법칙'으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 츠. 배심원 질문

실제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과정은 없다. 법정에서 펼쳐지는 신문, 증거, 증인을 통한 실제적인 진실을 밝혀야 하지만, 본 수업모형에서는 학생들의 참여와 발언권을 주기위해 이 과정을 추가하였다. 학생들은 지금까지의 재판과정을 보고 자신들이 검사, 변호인 입장이었다면 어떤 진실을 찾아 내기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을 지를 생각하여 판사, 피고인, 검사, 변호인에게 질문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기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sup>12)</sup>

#### ㅋ. 판사의 심리 종료 선언, 토의

판사는 심리의 종료를 선언하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선고를 준비한다. 재판부는 검사, 변호인의 모든 진술, 증인신문 등을 듣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배심원들과 함께 토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프. 선고

재판의 모든 과정을 정리하여 최종 결론을 내리는 단계이다. 선고시 재판부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위해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적절한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선고에 임해야 한다. 실제 재판에서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여 진행하지만 본 수업모형에서는 시간상 · 공간

---

12) 법정에서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해서 신문하는 것은 판사, 검사, 변호인이 할 일이다. 하지만 배심원도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럴 때는 배심원이 직접 묻지 못하고 판사에게 질문을 요청하면 판사가 배심원을 대신하여 물어보게 된다. 미국에서는 배심원의 질문을 제한하는 수가 많고, 질문을 허용하더라도 대개 질문사항을 서면에 적어 내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배심원은 그 재판절차 외에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상 제약으로 재판과정과 이어서 진행한다. 선고 시 검사, 서기, 주임은 미리 자신의 자리에 앉아 대기하고 법정 경위는 자신의 위치에 서 있다. 선고기일도 재판의 시작과 같이 법정경위의 알림으로 선고가 시작하고 검사, 방청객 등 모든 법정의 사람들이 일어난다. 재판부가 착석 후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는다. 재판장은 사건번호, 피고인을 호명하며 판결의 이유를 밝히고 유·무죄, 형량을 선고한다.

#### ▶4단계: 청소년 법정제도를 통한 결과도출

##### ① 판결문 쓰기

재판절차를 통해 법적 쟁점과 과정을 확인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결문 작성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적절한 판결 이유를 밝힘으로써 학생들의 판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사회과 수업에서의 바람직한 법교육의 목표는 법의식의 함양을 통하여 준법정신을 높이고, 생활상 필요한 법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것이다. 판결문 작성으로 법률용어와 친숙해지고 소감을 발표하면서 재판과정을 정리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를 통해 올바른 법의식을 정착할 수 있다.

##### ② 다음 재판을 위한 법정보고서 만들기

기존 모의재판은 재판의 과정을 이해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지만 청소년 법정제도는 청소년 피고인들이 다음 법정에서 배심원, 변호사, 검사 등으로 참여하는 의무가 주어지고 2단계에서 연계성을 이해하고 재판이 끝난 후에는 다음 재판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피고인은 다음 재판을 위한 준비를 계획표로 작성하도록 한다. 작성 시에는

피고인의 위치에 있었던 학생으로서 다음 재판에 보안할 점을 제시하여 개선하도록 한다. 다음 재판기일에 법정 구성원으로 참여 후 법정보고서도 적성해 본다.

### ▶5단계 : 일반화 과정과 청소년 법정제도의 결과 비교 · 평가하기

논의를 통한 결과와 재판 과정을 통한 선고 결과를 비교하고 평가해보는 단계이다.

1단계에서는 법률적인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경험에 비추어 논의한 결과이므로 법률적 과정을 거쳤을 때의 결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생겨날 결과를 예측해보고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청소년 법정제도 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3. 청소년 법정제도 수업모형 수업 사례 제시

### 1) 수업의 개관

본 수업은 재판 전 논의를 통해 일반적인 결과 도출 후 재판을 통한 법률적 판단을 거쳐 비교 · 평가하는 청소년 법정제도 수업모형이므로 학습자의 경험이 중요하고 생활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고,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게임중독에서 오는 아이템 사기를 주제로 선정한다.

이 수업은 학습자 자신들이 게임을 하면서 문제되었던 상황들을 발표하고 논의 후 결론을 도출하고 재판에서 법적 공방을 하게 된다. 이로서 일상적인 문제가 법체계에 기초하여 다루어지는 과정을 체험하고 법적

접근성을 높여 법에 친숙해 지고 사회과 법교육의 목표인 법의식 함양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 2) 수업의 목표

### ① 지식, 이해

- 재판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법률용어와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제시된 사례의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나온 법적 증거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② 기능

-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주장을 위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 대립하는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법적 지식을 활용한 주변 법적 문제에 적용, 활용 할 수 있다.

### ③ 태도, 가치

-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법에 대해 신뢰감을 갖는다.
- 권리보장 수단으로서의 재판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3) 지도상의 유의점

본 수업은 재판과정을 임의적으로 꾸미는 것으로 판사는 심문절차를

통해 법적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논쟁점을 확인한다.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교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자료의 선정, 학급구성, 시간계획의 문제가 있다.

고려사항은 첫째, 자료의 선정은 교실에서 재판에 적합한 문제나 상황을 선정해야 한다. 둘째, 학급구성에 있어 학습활동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발표와 논의를 통해 사례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주제를 정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재판을 진행하므로 소집단별로 역할을 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셋째, 시간계획은 융통성 있게 계획할 수 있다. 실제 재판의 기본적인 이해와 진행, 판결까지는 사회과 수업의 경우 한 차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시간을 연장하여 융통성 있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수업방식

이 수업은 모의재판의 절차를 적용하여 진행하지만 재판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주제를 학생들이 정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재판을 구성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적 쟁점을 이해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말을 지을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학급구성은 전 학생이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이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본 수업모형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의식을 신장하고 재판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고안되었는데 수업에 잘 참여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는 학생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나리오 준비에서 판결문 작성, 그리고 재판결과 비교까지 모든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하도록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수업모형의 수업 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지도상의 유의점을 갖는

다.

첫째, 재판 자체가 대부분의 교사가 겪지 않는 특별한 상황이므로 교사의 경험의 부재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법정의 모습과 또한 편견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둘째, 교사는 법에 대한 전문용어의 사용에 전문가가 아니다. 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므로 시나리오 작성에서 교사의 안내자적 역할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학생들의 경험을 논의할 때 교사의 가치관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5) 수업과정안

이 수업모형은 2차시로 연결하여 적용한다. 2차시를 분리하여 적용할 경우 재판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모의법정의 목표인 재판과정을 이해하는데 부적절하다. 따라서 2차시를 연결하여 융통성 있게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ㄱ. 1차시

본 차시의 학습목표는 학생들이 법적 쟁점이 될 사안을 발표하고 청소년 법정제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위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연상하고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교사는 친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차시에서 나눠주는 활동지는 학생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학생들 상호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다음 차시에 진행할 재판과정에 공

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학생들은 재판이라는 단어에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청소년 법정 제도를 예로 들며 일반재판과 청소년 법정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차시 수업 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지도상의 유의점을 갖는다.

첫째, 학생들이 생각하는 문제점들 중에는 재판의 주제로 선정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사의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둘째, 주제선정 시 학생들의 생각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교사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셋째, 재판의 역할을 선정하고 배역을 맡은 학생들의 원활한 재판과정을 위해 훈련과 이해를 돕는다.

넷째, 주제선정 후 재판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활동지에 학생 나름대로의 결론을 활동지에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표3〉 청소년 법정제도 교수·학습 과정안 1차시

<b>학습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쟁점이 될 사안을 발표할 수 있다.</li> <li>▶ 청소년 법정제도를 이해하고 의의를 설명할 있다.</li> </ul>	차 시	1
<b>단계</b>			<b>학습활동</b>		
			<b>교사</b>	<b>학생</b>	<b>유의점</b>
1 단 계	추상적인 경험을 구체적인 경험으로 일반화하 기	▶ 학습목표 확인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문답식	▶ 교사는 학 습 목 표 를 판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쟁점이 될 사안 선택</li> <li>▶ 활동지 활용법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생활에서 문제가 되었던 상황이나 경험을 발표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도한다.</li> <li>▶ 발표한 사례를 질문과 토론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청소년 법정제도의 사안으로 선정한다.</li> <li>▶ 활동지를 배부하고 작성 방법을 설명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은 문제점을 발표하고 다른 학생의 의견을 경청한다.</li> <li>▶ 활동지의 작성 방법을 안다.</li> </ul>	▶ 학생들이 한쪽 의견에만 편중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2 단 계	청소년 법정제도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법정제도 이해하기</li> <li>▶ 역할 확인</li> <li>▶ 참여자 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 재판이라는 상황에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쉬운 예를 통해 설명한다.</li> <li>▶ 학생들의 역할을 확인한다.</li> <li>▶ 일반재판과 청소년 법정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개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확인한다.</li> <li>▶ 자신의 말은 역할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한다.</li> </ul>	▶ 경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ㄴ. 2차시

본 차시의 학습목표는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상에서의 법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고 법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 수업에서는 1차시의 주제로 재판을 열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사기를 주제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본 차시에서의 핵심은 재판과정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판결문과 법정보고서를 써봄으로써 친숙하지 않았던 법정과 법교육이라는 개념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본 차시에서 나눠주는 법정보고서는 재판과정의 전반적인 이해와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또한 피고인이 다음 법정에서 배심원, 변호사, 검사 등으로 참여하는 의무가 주어지므로 미국의 청소년 법정제도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이번 재판과정을 반성하고 개선하여 다음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좀 더 나은 재판을 할 수 있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차시 수업 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지도상의 유의점을 갖는다.

첫째, 재판 실연 시 참여하는 학생은 적극적인 자세,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경청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실연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호흡을 맞추지 못한다면 실패한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1단계의 결과와 재판을 통한 판결과의 차이점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법적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표4〉 청소년 법정제도 교수·학습 과정안 2차시

<b>학습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 한다.</li> <li>▶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적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li> <li>▶ 재판과정을 통해 법의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li> </ul>	차 시	2
<b>단계</b>			<b>학습활동</b>		
			<b>교사</b>	<b>학생</b>	<b>유의점</b>
3 단 계	청소년 법정제도 진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판의 실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 분위기를 살려 실제의 연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li>▶ 재구성한 재판절차를 지도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쟁점이 되는 사안을 재판 전·후 과정을 비교하며 실연에 참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li> </ul>
4 단 계	청소년 법정제도를 통한 결과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결문 쓰기</li> <li>▶ 법정보고서 만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판과정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지도한다.</li> <li>▶ 판결문 작성을 통해 쟁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생들의 판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li>▶ 다음 재판을 위해 계획을 제시하고 보완점을 제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결문 작성을 통해 쟁점을 정리한다.</li> <li>▶ 보완점을 발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li> </ul>

5 단 계	청소년 법정제도의 결과 비교·평가	▶ 결과 비 교·평가  ▶ 종합정리	▶ 1단계에서 논의한 결 과와 재판 후 결과를 비교하여 재판과정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 도록 지도한다. ▶ 청소년 법정제도 활동 을 종합 정리한다.	▶ 역할에 대한 소감발표  ▶ 반성적 태도 고찰	▶ 진지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	------------------------------	--	--	---------------------------------

## IV. 결론 및 시사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시민으로서 사법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법과 제도에 대한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서 법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 시점에서 법의식 함양을 위한 수업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모형의 개발과정에서 미국의 청소년 법정제도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로스테인(Rothstein, 1985)은 “초범자들이 비행이 습관이 되기 전에 사법체계 내에서 그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만듦으로써” 청소년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법교육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청소년 법정제도가 재비행 감소 및 청소년들의 법의식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청소년 법정제도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의 향상, 동료효과, 사회성의 발달 등 법의식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에 기반을 두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청소년 법정제도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법의식 신장을 위한 수업모형 개발을 위하여 첫째, 법교육의 의의와 목표에 대해 살펴보고 청소년 법정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사회과에서의 법교육은 사회생활 전반과 관련되어 있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법적 생활을 경험하게 하고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 중심의 주입식 수업방법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과에서의 법교육 목표인 법의식 신장을 위해 참여형 수업방안인 청소년 법정제도 모형을 제안했다.

둘째, 미국의 청소년 법정제도에 바탕을 두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의 모의재판은 일부 적극적인 학생들만이 활동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발표하고 이 경험이 다른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으로 일반화 할 수 있는 단계를 추가하여 재판이 핵심쟁점을 스스로 설정하도록 하여 잘못을 저지른 한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험을 통한 논의로 이끌어낸 결론과 재판에 의한 판결과 비교하여 재판과정이 끝난 후에는 재판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간의 결과를 비교하여 적절한 판결이었는지 여부를 학생들 스스로 결론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법의식을 신장하고 소송에 관한 사법절차를 이해하고 실제 학교생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아이템 사기’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수업과정안, 시나리오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법정제도를 활용한 수업모형에서 기대되는 효과로는 첫째, 기존 교사중심의 강의식 수업보다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법관련 지식을 획득할 수 있게 하며, 획득한 지식은 청소년 법정제도 수업모형의 실연으로 학습하게 되므로 강의식 수업보다 법적 절차, 법의 기능, 법의 역할 등 법관련 지식을 획득하게 된다.

둘째, 기존 학교 수업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재판을 통해 어렵고 딱딱했던 법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법의 신뢰감을 가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민주시민으로서 법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게 된다.

셋째, 사례를 통해 법적 해결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당면한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법의식 신장을 위한 법교육

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청소년 법정제도에 근거를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학교의 특수성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정과 변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법의식이 미약하기에 본 연구가 비록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적절한 수준의 교수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적용하였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입시의 문 앞에서 시간을 다투는 교육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적 · 장소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유로운 시간 설정과 적절한 수업계획을 세운다면 그 교육적 효과는 높아질 것이다. 또한 미국의 청소년 법정제도가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국가 차원의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이었다. 우리나라의 법교육도 학교 안에서만 행해진다면 항상 제자리걸음으로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법률전문가 집단의 지원, 학교간의 전문적인 네트워킹을 통하여 청소년 법정제도의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운규(2007). 『국민참여재판 모의재판을 보고』, 공평과 정의
- 김남경(2007). “사회과 법교육이 고등학생들의 법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울산대 교육대학원
- 김범주(2001). 『법치주의와 법교육』, 한국교원대
- \_\_\_\_\_ (2003). 『고등학교 법과 사회 지도서』 서울 : 교학사
- \_\_\_\_\_ (2007). “온라인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문제 및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광운대 정보통신 대학원
- 김영민(2002). “법교육과 참여 학습방법”, 시민교육연구 제34권 제1호, pp.165~189
- 김원주(1991). 『법학통론』, 한국방송대 출판부
- 김형경(2007). “집단학습의 수업모형과 수업설계”, 교육연구 제27권 제1호, pp.20~25
- 김해성(2004). “사회과 법교육에 있어서 국제법 교육의 실태와 대안탐색에 관한 연구”, 사회과교육 제36권 제2호, pp.51~68
- 고재영(2002).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토론 학습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 논문, 청구교육대학교
- 교육인적자원부(1998). 『사회과 교육과정』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곽한영(2006). “한국형 청소년 법정제도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8권 제2호, pp.1~25
- \_\_\_\_\_ (2007). 『법의식과 법교육』, 한국법교육센터
- 권낙원 · 김동협(2006). 『교수-학습 이론의 이해』, 문음사

- 문인화(2001). “초등 사회과 논쟁학습이 의사결정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광주교육대학교
- 박성혁 · 이봉민(2003). “청소년 법정제도를 활용한 학생선도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5권 제2호, pp.25~44
- 박성혁 · 홍진환(2007). “참여형 법교육의 정당성 근거”, 시민교육연구 제39권 제4호, pp.47~66
- 박성혁 외1(2007). 『학생자치법정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교육센터
- 박성혁(2005). “법교육의 본질관에 입각한 ‘법과 사회’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분석연구”, 제37권 제1호, pp.55~80
- 박수봉(1999). “정보화 사회에서 법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박용조(2002). “한·미 사회과 법교육의 법인식론적 비교”, 시민과 교육연구 제12권 2호, pp.269~321
- 법무부(2005). 『초·중등 법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분석·개발연구』 서울 : 법무부, 법교육연구위원회
- \_\_\_\_\_ (2006).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방향』, 서울 : 법무부, 법교육연구위원회
- \_\_\_\_\_ (2007). 『법교육 강화를 위한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연구』, 국정홍보처
- \_\_\_\_\_ (2008). 『청소년의 법과 생활』, 법무부·한국법교육센터
- 백장현 외2(2003.)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처방학습에 관한 연구』,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집
- 송현정(2000). “법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시민과 변호사 통권 93호, pp.50~53
- \_\_\_\_\_ (2005). “사회과 법교육 과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시민과 변호

사 제37권 제3호, pp.147~175

- 안병문(2007). “집단학습 수업모형 적용과 그 효과”, 교육연구 제27권 제1호, pp.73~78
- 안병모(2006). “법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참여학습형 법교육”,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수정(2005). 『국민참여 모의재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이승준(2006). “국민의 사법참여 재판제도에 관한 모의재판 교수·학습과정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 이은임(2004). “모의재판을 통한 초등법교육의 수업개선방안”, 석사학위 논문, 부산교대 교육대학원
- 이은자(2006). “고등학교 법교육의 실태와 법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정선(2007). “수업모형과 학습효과”, 교육연구 제27권 1호, pp.42~47
- 이지혜(2006). “청소년 사이버범죄 분석을 통한 고등학교 법교육 개선방안”: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 교육대학원
- 이희승(2005). “모의재판수업이 고등학생 법의식 신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 교육대학원
- 전국사회교사모임(2008). 『청소년을 위한 판례집』, 전국사회교사모임
- 전종호(2007). 『국민참여형 형사재판제도』,공평과 정의
- 정성호(2005). 『온라인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서울 : 정성호 의원실
- 정용상(2000). “법교과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교육논총 제2집 , pp.405~430
- 정석기(2008). 『좋은 수업설계와 실제』,원미사
- 최인화(1994). “한국의 법교육 현황과 전개방향”, 한국교육21, pp.119~129

- 한국소년개발원(1995). 『생활법률 이해활동』, 서울 : 한국소년개발원
- 한국게임산업진흥원(2007). 『게임에 대한 인식조사』, 서울 : 한국게임  
산업진흥원
- 허종렬(1997). “법교육(LRE)이란 무엇인가”, 새교육 513, pp.158~163,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David Ball, Ph. D. (2007). 『배심재판을 위한 연국기법과 전략』 구본진  
외 3 역, 박영사
- Deborah Williamson. Kevin I. Minor, James Walker Fox (2007).  
『법교육학 개론』 박성혁,곽한영 옮김 , 한국법교육센터
- Carp. Robert A. (2004). 『미국의 사법 제도』 이경식 옮김, 미국 국무  
부 발행
- Jeffrey T. Frederick, PH. D. (2008). 『배심원 선정』 이은로 옮김, 한  
울
- Lyles J. & Knepper p.(1997). "Teen Court's potential as a  
law-related education medium : The experience of  
Franklin County, Kentucky", 『Law-related education  
and Juvenile justice : promoting Cirizenship among  
juvenile offenders』 , Charles Thomas , publisher, LTD.
- Rearson, N.(1985). 『Teen Court』 , Correction Today, February

## 참고웹사이트

[www.lawdu.or.kr](http://www.lawdu.or.kr)

[www.moj.go.kr](http://www.moj.go.kr)

## 참고법률

법률 제 7623호 형법

법률 제 8495호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 관한법률

# ABSTRACT

## Development in a Teaching Model for Strengthening the Legal Consciousness in Social Studies

Jung Eun-Kyung

Major in General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 modern society gets complex and diverse, it is changed into society of pointing to the law. Thus, most of social conflicts come to cause a legal dispute.

When students face the big and small legal disputes after advancing to society, they can be protected by the law, can rightly exercise a right, and can cope with a problem of legal dispute only when necessarily having the basically legal knowledge. The part, of which the law-related education in the social studies will

need to be in charge, is to allow students to be able to cope rightly by being equipped with the legal consciousness when confronting several legal problems.

The law-related education is the core sphere in the democratic civil education that fosters citizens, who clearly recognize own right and can positively participate in society through promoting the sound legal consciousness. Unlike the legal education that aims to bring up the legal expert, it has difference in a sense that aims to promote the legal consciousness in adolescents and general citizens.

The law-related education is seen to have the fundamental objective as fostering the positively legal attitude on the one hand and as inducing the positive participation in community life, by organically offering students an educational opportunity, which will develop attitude and value system, as well as basic knowledge necessary for effectively coping with diverse laws and legal disputes, which occur in the complicated modern society. The important objective in the social studies is to foster the desirably democratic citizens by cultivating a learner's thinking ability. The law-related education also forms the core element in education for training a democratic citizen in a sense that offers foundation to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ism in order to maintain the democratic order in community. Accordingly, the demand for law-related education according to social development is expected to get higher. However, the law-related education has been performed sporadically just with the common point that has the

law as the contents so far, thus the people's legal consciousness couldn't help being low.

Accordingly, the researcher examined the significance and the aim in the law-related education of the social studies, and researched into the Teen Court in America, which is a means of the law-related education. In America that the law-related education had been activated the most, the law studies movement had been begun since the 1950s. Numerous programs were attempted by unit in each state or federation. The law-related education program, which had been the most successful among those things, is just 'Teen Court, Youth Court, or peer Court.' As the Teen Court is a method that aims to reduce the recidivism in adolescents, it is a system of trying a case and giving decision in the court in which the peer adolescents participate on a first offender or a light issue. Based on this, the Teen Court teaching model proper for our real situation was suggest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legal consciousness, which is the objective of the law-related education.

Regarding this teaching model, a critical mind was felt in a sense that only some of positive students are active and the majority of students don't participate in a case of using the existing mock trial, and in a sense that the high school difficult to implement even this is performing the law-related education centering on theory. The stage was arranged that can be participated even by students who don't perform the specific cast. After the trial process is finished, it compared the results between

students with participation in a trial and students without participation in a trial, thereby having allowed students themselves to be able to conclude whether or not proper judgment.

Especially unlike the mock trial that literally applied the scenario made by a teacher, adolescents' specific experience was allowed to be the starting point of the court. And, the stage was arranged that can be generalized with new experience as for the adolescents with different experience. Thus, students were allowed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legal consciousness, which is the final goal of the law-related education, by participating in teaching with their mutually common critical mind and interest.

Consequently, through this study, first, the substantially legal knowledge is allowed to be acquired in order to solve the legal problem. And, the acquired knowledge comes to be learnt with the demonstration of a teaching model in the Teen Court. Thus, the law-related knowledge comes to be acquired such as the legal procedure, legal function, and legal role more than the lecture-styled teaching.

Second, through a trial that had failed to be experienced in the existing school teaching, the students can have confidence in the law by escaping from the image dubbed the difficult and strict law, and further come to devote themselves to promoting the legal consciousness as a democratic citizen.

Third, students, who experienced the legally-solving process through a case, may expect to be helpful in understanding their facing legal problem.

## 부록 1-청소년 법정제도 시나리오

### 제목 : 게임아이템 사기와 폭행

#### ◎ 사건개요

이만해와 차인봉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서로 친하지 않은 사이로 이번 사건으로 서로를 알게 되었다. 이만해(판매자), 차인봉(구매자)은 게임아이템과 아이템 장비를 온라인상에서 거래하였다. 8개월 후 아이템 가격이 상승하자 이만해는 아이템을 다시 구입하겠다고 하자 차인봉은 구입을 거부하였고 이만해는 게임회사에 도용당했다고 전화를 하여 새로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그 아이템을 이용해 게임을 하였고 차인봉이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만해를 찾아가 폭행을 했다.

#### ◎ 재판 대본

##### 재판 시작

사 회 : (금일 자치법정에 관한 개시선언) 지금으로부터 ○○고등학교 청소년 법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 회 : 이 법정은 ○○고등학교 청소년 법정으로서 ○○○○년 ○○월부터 실시되었던 ○○고등학교 청소년 법정 상벌점제에 규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누적 벌점이 10점을 초과한 학생들의 벌점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양형을 위한 법정임을 말씀드리며, 이 법정 운영에 관한 기준은 ○○○○년 ○○고등학교 청소년 법정 운영계획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사 회 : (재판부가 들어오는 과정)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 법정은 ○○고등학교 청소년 법정입니다.”

사 회 :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모두 경례한다.) 바로!

(재판부가 착석하면) “모두 앉아 주십시오.”

재판장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년 ○○월 ○○일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예정한 바와 같이 벌점자 차인봉 학생에 대한 ○○○○-○○호 사건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의 출석 여부를 확

인하겠습니다. 검사부측의 남다름 학생, 벌점자 차인봉 학생과 변호인 조인선 학생 출석하셨나요?

검사부 및 변호인 : 네

재판장 : 운영위원은 배심원을 입정시켜 주십시오.

운영위원 : (법정 내 출입구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문 밖에서 대기 중인 배심원들을 입정시켜 지정된 자리로 안내한다)

재판장 : 배심원들은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십시오.(배심원들 모두 일어남)

서 기 : (배심원들 중 한 명에게 선서서를 주고 배심원들에게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선서서를 받은 배심원 : (선서서 낭독) “저희 배심원 일동은 이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이 법정이 지정하는 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한 평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재판장 : (배심원들을 바라보며) 재판의 진행순서는 모두 진술절차, 증거조사절차, 벌점자 신문, 검사부의 논고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배심원들의 토론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공판절차는 검사부의 공소장 낭독과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한 벌점자의 모두진술로 시작됩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 벌점카드에 기록된 행위로 인해 벌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검사부 측과 변호인 측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만, 벌점부과 전후 과정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본 공판절차에서 그 부분을 다투게 됩니다. 검사부 측과 변호인 측이 제시할 증거들에 관하여는 이미 합의하였습니다.

오늘은 검사부측 증거물과 증인 1명, 벌점자 측 증인 1명에 대한 증인신문 및 증거확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증인의 법정에서의 증언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잘 유념하여 주십시오.

증거조사가 끝나게 되면 검사부 측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듣고 배심원들의 질문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 후 여러분들은 평의실로 퇴장하여 벌점자에 대한 벌점 인정 여부에 관하여 판사와 함께 평의를 하게 되며, 만일 벌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평결한 경우에는 벌점자 차인봉 학생의 양형에 관하여 토론을 할 것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배심원으로서 여러분의 역할은 오로지 오늘 이 법정에서 제출되는 증거인 증인의 증언과 증거물

만을 가지고 별점자의 이의 제기를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재판과정에서 검사부나 변호인들이 증인의 증언 중에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하면 판사인 제가 그 이의를 받아들이거나 이의를 기각할 것입니다. 제가 이의를 받아들이는 경우, 여러분은 그 증언을 이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는데 고려하여서는 안 됩니다.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한 평의를 위하여 퇴장할 때까지 이 사건이나 증거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심지어는 다른 배심원들과도 의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심원으로서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무시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배심원들 : 예.

재판장 : 별점자 차인봉 학생 나왔습니까?

별점자 : (변호인석 옆에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네.

재판장 : 별점자는 앞으로 진행될 심리과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한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별점자 : 예.

재판장 : 차인봉 학생은 학년 반 번호를 말해주십시오.

별점자 : 2학년 1반 13번입니다.

재판장 : 별점자는, 공소장을 받아 보았죠?

별점자 : 예.

재판장 : 별점자 자리에 앉으세요.

### 별점자 차인봉 재판

재판장 : 그럼 차인봉 학생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부의 모두 진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부석을 쳐다보며) 검사부측, 모두진술을 하십시오.

검사부 : 예. 별점자 차인봉 학생은 ○○○○년 ○○월 ○○일 명찰 미착용을 이유

로 담임선생님께 벌점 1점을 부과 받았습니다. ○○○○년 ○○월 ○○ 일에는 두발상태 불량을 이유로 정서영선생님께 벌점 3점을 부과 받았습니다. ○○○○년 ○○월 ○○일 게임아이템사기를 이유로 같은 학교 이만해 학생을 폭행하여 담임선생님께 벌점 7점을 부과 받았습니다. 따라서 누가벌점이 총11점에 해당하여 ○○고등학교 상벌점제 근거하여 기소하는 바입니다.

재판장 : (벌점자석을 쳐다보며) 벌점자 차인봉 학생, 모두진술을 하시겠습니까?

벌점자 : 제가 받은 벌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을 비는 바입니다. 하지만 게임아이템사기를 이유로 한 벌점에 관하여는 인정하기 힘듭니다. 저는 돈을 주고 아이템을 구매했고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해를 가한 적이 없습니다. 폭행을 한 것은 이만해학생이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렸기 때문에 맞을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 검사부측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시겠습니까?

검사부 : 우선 차인봉 학생이 이만해 학생에게 보낸 쪽지를 증거물로 제출 할 계획이며, 게임아이템사기 사건의 피해자 이만해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폭행의 경위를 명백히 밝히겠습니다.

재판장 : 벌점자 차인봉 학생의 변호인은 어떠하신가요?

변호인 : 차인봉과 함께 게임을 한 정내미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 당시 정확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벌점을 받을 합당한 상황이 아니며 차인봉 학생이 받은 벌점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합니다.

## 증거 조사

재판장 : 그럼 증거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 : 본 사건의 공판절차에 앞서 열린 공판 준비 절차에서 검사부 측과 벌점자 차인봉 학생 측이 본 재판의 공판 절차에서 심리할 증인들과 증거물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공판절차에서는 공판 준비 절차에서 합의한 대로 먼저 검사부 측의 증인 이만해 학생과 변호인 측 증인

이만해 학생을 심문을 하겠습니다.

재판장 : 우선 오늘 증언을 위하여 나오신 증인이 이 자리에 계신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해 학생과 정내미 학생은 출석하셨습니까?

증인들 : 예.

재판장 : 증인들은 제가 부를 때 증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검사부측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부 : 이만해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재판장 : 이만해 학생은 증인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 별점자 차인봉 학생과 친척관계나 다른 특별한 관계에 있지는 않지요?

증 인 : 네, 같은 학교 학생일 뿐입니다.

재판장 : 그러면 선서를 한 다음에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한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증인께서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증 인 : (선서서를 보면서 일어서서 낭독한다) “ 선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재판장 : 증인, 방금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선서하셨습니다. 선서한 바와 같이 질문에 따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심문하시겠습니까?

검사부 : 이만해 학생. 이만해 학생은 차인봉 학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만해 : 같은 학교 다닌다는 사실이 싫은 친구입니다.

검사부 : 그러면 차인봉 학생을 증오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만해 : 왜 저를 폭행했는지 묻고 싶고 분합니다.

검사부 :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차인봉 학생이 이만해 학생에게 돈을 입금했고 이만해 학생은 차인봉 학생에게 아이템을 넘겨주었지요?

이만해 : 네, 저는 캐릭터와 아이템 장비를 판다는 사실을 게임사이트에 올렸고 차인봉학생이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넘겨주었습니다.

검사부 : 8개월 후 이만해 학생이 판 아이템의 가격이 상승했지요?

이만해 : 네. 상승한 아이템을 보자 욕심이 생겨 다시 아이템을 돌려달라고 말했고 돈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검사부 : 그러던 중 이만해 학생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새로 부여받았지요?

이만해 : ....네.... 그 부분은 저도 잘못을 인정하고 담임선생님에게 별점 4점을 받았습시다.

검사부 : 차인봉 학생이 게임방으로 찾아왔나요?

이만해 : 네. 저는 하교 후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만해가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만해의 친구 4명과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부 :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였나요?

이만해 : 잠깐 어디론가 가자고 하여 저는 따라갔어요. 근처 놀이터 앞에서 저를 폭행했습니다.

검사부 : 배심원 여러분 분명 이만해 학생에게는 이번 사건이 준 피해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아이템을 주고받는 행위자체도 잘못되었지만 친구들을 데리고 이만해 학생을 찾아가 폭행을 하는 것은 이만해 학생에게는 신체적 충격과 정신적 충격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폭행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이는 별점의 사유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부 : 그럼 다음으로 변호인 측 반대심문 하시겠습니까?

변호인 : 네. 이만해 학생 혹시 게임아이템을 현금을 받고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만해 :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변호인 : 아닙니다. 현금계정거래는 불법입니다. 이만해 학생은 단순히 취미로 게임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반 친구들의 인터뷰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뷰내용을 서기에게 전해준다. 서기는 인터뷰내용을 판사와 검사에게 전해준다.) 여기에는 이만해 학생이 게임아이템을 판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살 사람을 찾고 있다고 친구들은 이야기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지요?

이만해 : 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들 하는건데.....

변호인 : 이로 보아 이만해 학생은 처음부터 게임을 즐겨하는 차인봉 학생에게 게임아이템을 팔려고 접근했고 나중에는 돌려달라고 요구까지 했습니다. 차인봉은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이만해 학생을 찾아 갔

습니다. 원인제공은 이만해 학생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만해 : 그렇지 않습니다. 인봉이는 무작정 저를 불러 폭행했어요.

변호인 : 저희들은 고등학생입니다. 게임아이템 사기가 웬말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차인봉 학생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친구들 끼리의 다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게임아이템 사기 부분에 있어서 차인봉 학생의 벌점 부과는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만해 : .....

변호인 : 이상입니다.

재판장 : 검사부와 변호인 측 더 추가할 심문 있으십니까?

검사부, 변호인 : 없습니다.

재판장 : 다음으로 변호인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겠습니다. 변호인 측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인 : 정내미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 : 증인 정내미 학생은 앞으로 나와 증인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 증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재판장 : 증인 정내미 학생이지요.

증 인 : 네, 그렇습니다.

재판장 : 별점자 차인봉 학생과 친척관계나 다른 특별한 관계에 있지는 않지요?

증 인 : 친구입니다.

재판장 : 그러면 선서를 한 다음에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한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증인께서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증 인 : (선서서를 보면서 일어서서 낭독한다) “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재판장 : 증인, 방금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선서하셨습니다. 선서한 바와 같이 질문에 따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심문하시겠습니까?

변호인 : 정내미 학생 처음부터 차인봉 학생이 게임에 중독되거나 심하게 캐릭터를 키우기도 했나요?

정내미 : 아니요. 처음에는 취미로 게임을 했었는데 어느날 부턴가 게임방에서 만해와 친하게 지내더니 갑자기 저에게 아이템 구입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변호인 : 그러면 차인봉 학생의 행동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정내미 : 네, 예전에는 1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만해에게 아이템을 구입하고 나서는 게임에 더 시간을 낭비했어요.

변호인 : 아이템 구입당시 만해에게 돈을 준 사실은 알고 있나요?

정내미 : 네. 저에게 돈이 있냐고 물었었고 나중에 저금한 돈으로 아이템을 구입한 사실을 저에게 말했어요.

변호인 : 이후 이만해 학생이 아이템을 돌려 달라고 한 사실도 아나요?

정내미 : 만해가 게임방으로 찾아와서 인봉이와 이야기 할 때 저도 옆에 있었어요. 한번 판 아이템을 돌려달라고 만해는 억지를 부렸어요.

변호인 :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정내미 : 인봉이는 고민을 했었고 만해가 전화를 자주하여 인봉이를 설득하려 했던 것 같아요.

변호인 : 다음으로 별점 상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차인봉 학생이 별점을 받은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만해 : 담임선생님께서서는 종례시간에 모두 눈을 감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게임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이템 구입은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 훈계말씀을 하시고 만해와 인봉이에게 별점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인봉이는 친구까지 폭행 했다고 추가로 별점을 더 주셨어요.

변호인 : 혹시 담임선생님은 이 상황을 정확히 아셨던 것 같았나요?

이만해 :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시다. 말씀하시는 도중에도 친구들끼리 돈이 오가며 아이템 구입을 하는 것은 나쁘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인 : 그럼 그 상황을 담임선생님께서서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별점을 주신 것입니까?

이만해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 : 담임선생님께서 별점을 주신상황이 무엇인가 잘못 됐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어림짐작으로 아이들 모두

에게 벌점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 : 검사부측 반대신문 하시겠습니까?

검사부 : 네, 정내미 학생은 선생님께서 추측으로 벌점을 부과 하셨다고 했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정내미 : 분명 선생님께서는 상황을 잘 모르시고 계시다는 눈치가 보였을 것입니다.

검사부 : 분명 그 당시 상황에서만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닙니까?

정내미 : 예....

검사부 : 제가 담임선생님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담임선생님께서 이 사실을 전혀 모르시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고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내미 학생, 차인봉 학생이 이만해 학생에게 속임을 당하여 아이템을 구입한 것 인가요?

이만해 : 아니요,

검사부 : 하지만 차인봉 학생은 단순히 취미로 게임을 했고 이만해 학생에게 아이터మ్ 구입을 듣고 현금거래를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변명에 불과하지 않나요?

변호인 : 재판장님 검사부측에서는 차인봉 학생의 잘못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재판장 : 인정합니다. 검사부측 주의하도록 하세요.

검사부 : 차인봉 학생이 이만해 학생에게 찾아와 폭행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폭행은 무조건 있어서는 안되지 않나요?

정내미 : 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만해가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판 아이터మ్을 돌려달라니..... 말이 안되요.

검사부 : 물론 학생들이끼리 게임을 하다보면 여러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차인봉 학생의 행동은 자신이 원해서 구입을 한 것이고 이로 인해 폭행까지 저지른 것이지 누군가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이터మ్을 구입한 행위, 거기에서 폭행까지 행하는 것은 다른 어떤 죄보다 무거운 것이고 어떠한 형태로든 용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에 대해 부과한 벌점에 대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 : 변호인, 검사부 더 추가할 사항 있으십니까?

검사부, 변호인 : 없습니다.

### 별점자 차인봉에 대한 신문

재판장 : 그럼 다음으로 별점자에 대하여 신문하겠습니다.

재판장 : 그럼 다음으로 별점자 차인봉에 대한 심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부측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부 : 별점자 차인봉은 지금까지 살면서 친구에게 속아 본 적 있으십니까?

변호인 : 지금 검사는 논의의 본질에 벗어난 지극히 심증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 기각합니다. 검사부측은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점자 : 네. 있습니다

검사부 : 그럼 그 당시 기분이 어땠나요?

별점자 : 배신감이 들었고, 그 친구가 미웠습니다.

검사부 : 그런 일이 여기에서 벌어졌습니다. 별점자는 피해자 이만해 학생의 입장을 조금, 아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점자 :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해 학생은 판아이템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시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검사부 : 그렇다고 친구를 폭행하나요? 그리고 잘 달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끼리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가격상승을 시켰다는 것은 이미 차인봉 학생은 단순히 취미로 게임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아이템 거래를 알고 있었고 이만해 학생에게 아이템을 구입해 가격 상승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별점자 : 그... 그건...

검사부 : 이상입니다.

재판장 : 다음으로 변호사측 별점자 심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 네. 별점자 차인봉 학생은 아이템을 현금거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차인봉 : 공공연한 일을 왜 저만 벌하시지는 모르겠어요.

변호사 : 친구를 폭행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차인봉 : 제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변호사 : 그렇습니다. 차인봉 학생은 친한 친구를 자기 손으로 폭행 했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입한 사실로 별점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 변호인, 검사부측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변호인,검사부 : 없습니다.

### 논고, 변론, 최후진술

재판장 : 이상으로 별점자 차인봉 학생에 대한 신문을 마칩니다. 이어서 검사부의 논고를 들겠습니다. 검사부의 논고와 구형을 부탁드립니다.

검사부 : 이 사건에 있어 차인봉 학생은 두 번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불법거래되고 있는 게임아이템을 반 친구에게 샀다는 사실입니다. 친구와 거래행위는 잘못되었음이 명백한데 여기에 폭행까지 행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차인봉학생의 유죄를 인정하시어 휴업토요일 천자문 쓰기, 게임의 문제점을 주제로 의견서 쓰기, 전문 상담사 선생님과 상담 5시간의 긍정적 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 변호인 측 최후 변론하십시오.

변호인 : 우선 저희는 검사부측 주장을 무조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현재 게임아이템의 불법여부가 논의 중에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 사이에 거래가 된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으로 별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폭행부분에 대해서는 차인봉학생도 인정하는 부분이므로 별점부과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게임아이템 거래부분의 별점부과는 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 : 별점자 차인봉 학생,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별점자 : 네. 저는 이 법정을 통해 저에게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취미로 했던 게임에서 이렇게 큰일로 커지게 되다니.....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친구를 폭행까지 한 점 용서를 구합니다. 만약 저에게 적절한 별점부과와 교육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판장 : 이상으로 별점자 차인봉 학생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차인봉 학생에 대한 배심원 여러분들의 평결은 배심원 토의 시간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심리의 종결 및 배심원 질문

재판장 : 그럼 지금부터 배심원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배심원대표 : 네, 있습니다.

재판장 : 누구에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배심원대표 : 검사님께 묻겠습니다.

재판장 : 시작하십시오.

배심원대표 : 검사님은 게임아이템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듯 한데 그냥 배경지식인지 아니면 사전에 준비한 자료인지 궁금합니다.

검사부 : 저라고 해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이번 사건을 맞게 되어 충분한 사전조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게임아이템 사기'란 미묘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더욱 준비를 많이 한 것도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 더 질문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배심원대표 : 없습니다.

### 모든 재판의 종결

재판장 : 이상으로 별점자 차인봉 학생에 대한 심리를 마치겠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별점자 차인봉 학생은 ○○○○년 ○○월 ○○일 명찰 미착용을 이유로 담임선생님께 별점 1점을 부과 받았습니다. ○○○○년 ○○월 ○○일에는 두발상태 불량을 이유로 정서영선생님께 별점 3점을 부과 받았습니다. ○○○○년 ○○월 ○○일 게임아이템사기를 이유로 같은 학교 이만해 학생을 폭행하여 정지훈선생님께 별점 7점을 부과 받았습니다. 별점자는 위 별점사항 중 ○○○○년 ○○월 ○○일 정지훈선생님에게 받은 별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 별점자 차인봉 학생은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또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별점자가 제기한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배심원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 검사부 및 변호인에게 묻겠습니다. 설명에 추가나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검사부 및 변호인 : 없습니다.

재판장 : (배심원들을 향해) 이제는 배심원 평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평결은 배심원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배심원 여러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심리와 평결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별점자 차인봉 학생의 주장에 대한 인정여부는 1차적으로 배심원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재판장 : 배심원 여러분, 이제 배심원실로 심리를 위해 퇴장하십시오.

(배심원들은 합의실로 각 퇴장)

이상으로 별점자 차인봉 학생에 대한 심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고 재판은 잠시 후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치 3번)

## 사건의 판결

재판장 : 이제 사건을 판단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만해와 차인봉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서로 친하지 않은 사이로 이번 사건으로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만해, 차인봉은 게임아이템과 아이템 장비를 온라인상에서 거래하였습니다. 8개월 후 아이템 가격이 상승하자 이만해는 다시 아이템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차인봉은 거부하였고 이만해는 게임회사에 아이템을 도용당했다고 신고를 하여 새로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다시 받은 아이템으로 게임을 하였습니다. 차인봉은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만해를 찾아가 폭행을 하였고 현재 차인봉 학생은 게임아이템 사기로 인한 벌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한 ○○고등학교 청소년 법정 배심원단은 벌점자 차인봉 학생에 대해 검사가 구형한 휴업토요일 천자문 쓰기, 게임의 문제점을 주제로 의견서 쓰기, 전문 상담사 선생님과 상담 5시간의 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게임아이템 거래는 어떠한 이유에도 용납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측에서는 학생들이 아직 어리고 게임을 취미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지만, 벌점자 차인봉 학생의 행위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담임선생님의 벌점부과의 문제입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선생님께서 벌점부과 당시 학생들이 인정할만한 벌점사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벌점부과를 한 점에 대해 오해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은 다만 차인봉학생을 생각해서 일부로 반 아이들에게 벌점을 부과할 때에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벌점부과는 차인봉학생을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벌점부과는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폭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친구들간의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차인봉 학생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인봉은 다음 기일에는 재판장으로 활동함을 알립니다.

\* 인터넷 사기 관련 법규

제347조(사기)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록 2-활동지

1. 학교생활에서 쟁점이 되었던 경험을 말해보자

2.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점의 해결책을 적어보자

3. 논의 후 재판 전 해결책을 정리하고 근거를 제시하자

### 부록 3-법정 보고서

재판일시	
피고인	
활동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번 법정의 처벌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보자.</li> <li>2. 내가 만일 재판관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 것인지 적어보자.</li> <li>3. 다음 기일이 역할에 대해 마음가짐, 각오를 적어보자.</li> </ol>
다음 재판기일	
역할	
활동 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정 사안에 대해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접근했나요?</li> <li>2.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가졌나요?</li> <li>3. 다수의견이나 사회통념에 밀리지 않고 판결을 내렸나요?</li> <li>4. 다른 학생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나요?</li> <li>5. 기타의견.</li> </ol>

부록 4-판결문

○○고등학교 ○학년 ○○반

판 결 문

사 건 ○○○○○

피 고 인 ○○○

주 소 :

검 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

주 문

이 유

1. 범죄사실
2. 증거 요지
3. 법령의 적용

판사 ○○○